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141(본소), 2015다10158(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141(본소), 2015다10158(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2나142(본소), 2012나159(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42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남부토건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화성산업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5. 6. 11.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2나142(본소), 2012나159(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등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갑 제8호증(미정산공사대금지불요청동향보고), 갑 제9호증의2(발파암수량집계), 갑 제9호증의3(보강토수량집계), 갑 제9호증의4(크락샤수량집계), 갑 제30호증의1(발파암수량집계), 갑 제30호증의2(보강토옹벽 및노상토운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나 회의자료 등에 불과하고 위 각 문서들에 의하여 원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문서들이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보강토공사의 정산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척하고 원심 법원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결과 및 2013. 8. 20.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보강토공사, 이 사건 야적암공사, 이 사건 발파암공사의 각 공사비를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감정 결과의 채택 또는 상반된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정산 선급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